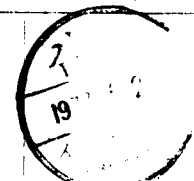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계415-	전화번호	결정규정 건건사항
처리기간	P13 시 장		
시행일자	결재 1977. 6. 18 611		
보존년한	제2부서 제2부서		

보조기관	제2부서장 전 결 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과장 권경중 지역계획계장	협 법무담당관 법무심사필 (고시안심사) 기획정리과장 권경중
기안책임자	김광선 77. 6. 임재남	조

경수참	유신조	각안참조	발신	통제	
-----	-----	------	----	----	--

제 목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승인

제 1 안 내 부 결 재 고시제 192호

1. 양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건설부 고시 제37호 (76. 3. 27)로 변경 결정 고시된 일부지역 에 대해 도시계획 법 제13조인 건설부 고시 제41호 (77. 3. 16)의 규정에 의거 하 옴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자 하오니 결재하며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 조서

변경 구분	위 칙	면 적(m ²)	비 고
농지→생산농지	영동과 옥동. 선정동일대	3,350.000	고시 제37호
농지→생산농지	영동과 동촌. 마곡. 내발산. 와발산. 공랑동일대	3,450.000	(76. 3. 27)

참 부 1. 고시 제37호 부

제 2 안 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31호 (76.3.27)로 일부 변경 결정
 고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적 승인 하였기
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호 (77.3.16)에 의거
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
 령구청 (충장소)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 인에게 보충 고시안 심사 1977.6.18 제 181호

심사자	1977.6.18	제 181호
심사자	도시정비과	충장소
주	관	1977.6.

1977.6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 승인 조서

변경구분	위 치	면적(m ²)	비고
농지지역 → 생산농지지역	영등포구 옥동. 산정동 일대	3,350.000	
농지지역 → 생산농지지역	영등포구 을동. 마곡. 내발산.	2,450.000	
	외발산. 공감동 일대		

(도면 생략)

제 3 안

수 신 건설부장관

발신 시장

주 목 등 건

1. 건설부 고시 제 31호 (76.3.27)로 용도지역 변경 결
 정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
 41호 (77.3.16)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적 시분 및 도면 표시
 와 같이 지적 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 부 고시문 사본 및 관계 도면 1부

제 4 안

수 신 영등포구청장. 양서출장소장

발신 시장

참 조 도시정비과장

156

주 목 등 건

1. 건설부 고시 제 31호 (76.3.27)로 용도지역 변경

결정된 지역에 대해 지적승인 하였고 홍보라니 관계 도시로 귀정 (총장소)에 비치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였으며 제공명 발급 및 인위업무에 안전을 기하기 바랍

첨 부 과사무실 및 도면 1부

제 5 안

수 소 총무처 장관 (시: 후원공보실장) 방산시(과)장

제 목 관(시)보 기재 의뢰

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기재의 의뢰 하오니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. 11202

가. 관(시)보 기재 구분 : 도시

나. 관(시)보 기재 간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
지적승인

다. 법적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3조

첨 부 과사무실 2부(1부).